

협 조 전

안전보건팀 / 담당자 : 유장열 이사
TEL 031- 645-2251 / FAX (031) 758-053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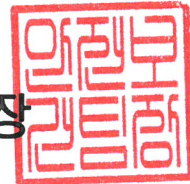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: 안전보건팀 2023-005호
시행일자 : 2023.02.17.
수 신 : 현장소장
참 조 : 담당자
제 목 :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내용 공지

1. 전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
2.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지 하오니
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: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부 . 끝.

안 전 보 건 팀 장



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노동개혁,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-

2023. 1. 9.



고용노동부

1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

□ 취약분야 집중 지원

-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등 3대 사고 8대 요인* 집중 점검(1만개소)
 - * 3대 사고: 추락·끼임·부딪힘(사망사고의 62.8%) / 8대 요인: 추락비계·지붕·사다리·고소작업대, 끼임방호장치·LOTO(Lock Out, Tag Out), 부딪힘혼재작업·충돌방지장치 등
 - 8대 요인 중심 스마트 안전장비(인공지능 인체감지 등) 집중 지원(250억원)
- 소규모(50인 미만)·제조업 사업장 위험공정개선 지원(4,820억원)
 - 중소기업 안전보건 컨설팅 확대* 및 대-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**
 - * ('22) 3.5천개 → ('23) 1.6만개 / ** ('22) 5.3억원 → ('23) 99.1억원
- 일하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재병원·근로자건강센터·직업병안심센터 등을 활용해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및 예방체계 강화
 - * 산재병원(10개소), 건강센터(23개소), 트라우마센터(13개소), 직업병안심센터(6개소) 등
 -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시행(7월) 및 산재 신속 처리
 - * 전속성 폐지에 따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규모 : 173만명
↳ 現 적용 80만명 + 신규 적용 49만명 + 비전속 44만명

□ 위험성 평가*를 보편적 예방 수단으로 확립

☞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하는 제도

- 중대재해 예방·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* 및 의무화 ('23년: 300인 이상 → '25년: 5인 이상, 산업안전보건법 개정)
 - * 고시 등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·방법·절차 등 대폭 개선(3월)
- 감독(1.7만개), 컨설팅(2.6만개), 기술지도(20만개), 교육 등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

'23년: 총 1.7만개소 + α	
위험성평가 점검 0.7만개	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확인·지도하는 '점검'으로 개편
일반감독 1만개+α	고위험 업종·시기, 재발 우려 동종·유사 업종 기획감독(수시)
특별감독	다수(2인 이상 동시 사망) 및 다회(1년간 3회 이상) 사망사고 발생시

- 중대재해 발생시 위험성평가 적정성, 근로자 참여 여부 등 엄정 수사

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(4가지)

-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는 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·이행하고,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·이행하고,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며, ④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②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해야할 일(4가지)

- ① **본사 전담조직(전담조직 없는 경우 전담자 등)을 통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***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.

* 사업장을 스스로 감독하는 것처럼 수시로 불시에 점검하여야 하고, 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현장을 관리토록 경영책임자는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보고받을 것

- ② **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보고·확인되면 법 준수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** 지시해야 합니다.

- ③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**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므로,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(공장장, 현장소장 등), 관리감독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부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,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**해야 합니다.

- ④ 점검 후 **미흡한 사항**이 있는 경우 전담조직이나 전담자 등을 통해 **필요한 조치**를 하도록 지시하고, 반드시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고받아 **확인**하고 **완료**해야 합니다.

* 사업의 특성, 규모에 따라 1~2주 또는 1개월에 1회 이상 등 수시로 점검

□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문화 확산

-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확대 및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 작업 중지권 활성화(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)
- 법령상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확화(연내), 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* 신설 등 근로자 책임 명확화
 - *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·확산(상반기)
- 지역별 '안전문화 실천 추진단'(2월), 안전문화 국민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적 안전의식을 확대하고 문화를 확산

□ 안전보건산업 육성 방안 마련

-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·보급(신규 250억원)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
 - * 고용부-과기부 간 「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」 MOU('22.11) 이행·추진
-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* 제정 추진 등 「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」 마련(6월)
 - * 교육, 기술지도, 인재양성, R&D 지원근거 마련 등

□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

- 처벌요건 명확화, 제재방식 개선 등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「중대재해처벌법」 개선방안 마련
 - * 전문가 TF운영(1~5월) →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 마련(6월) 후 입법추진
-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現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 정비(1분기~)
 - *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편, 근로자 의무 명확화 등
- 기술·산업변화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단계적 현행화(1월 입법예고)
- 안전보건규칙을 예방·처벌 규정으로 분류하여 필수 기준은 처벌을 유지하고, 선택·대체 가능 사항은 고시·가이드 등으로 전환(1분기~)
- 특히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토록 부적합·불합리한 노후 규정을 신속히 폐지 또는 개선(1월 입법예고)
 - * (예) ①안전난간 기둥을 촘촘히 설치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무 예외 인정
②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 설치 기준 등 ③굴착면 기울기 기준 합리화 등